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권칠승·강선우·소병훈

김남희 • 조 국 • 송재봉

강준현 • 이병진 • 이기헌

김준형 · 임호선 · 노종면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.

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·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·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·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·발급하는 경우와 직접방문하여 열람·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

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발급"을 "발급(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 수료를 면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	제19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
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	①
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	
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	
(閱覽)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	
항증명서의 <u>발급</u> 을 청구할 수	<u>발</u> 급(인터넷, 그 밖의
있다. 다만, 등기기록의 부속서	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
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	자적 방법을 포함한다. 이하 이
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	<u> 조에서 같다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	③
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	
칙으로 정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
	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
	서의 발급이 인터넷, 그 밖의
	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
	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
	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